

◆ 학교 규칙 ◆



홀트 학교

홀트학교 규칙

[2007. 5. 1 전부개정]

[2011. 3. 1 일부개정]

[2014. 1. 15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홀트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홀트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는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기본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및 학제) 본교는 홀트학교라 칭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를 둔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42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① 유치원 과정 : 1년
- ② 초등학교 과정 : 6년
- ③ 중학교 과정 : 3년
- ④ 고등학교 과정 : 3년
- ⑤ 전공과 과정 : 2년

제7조 (학년)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을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편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각 과정별 인가학급 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치원 과정 : 1학급
2. 초등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12학급
3. 중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6학급
4. 고등학교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6학급
5. 전공과 과정 : 각 학년별 2학급씩 전 학년 4학급

제11조 (학생정원) 본교학생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과정수료 · 졸업

제12조 (교육과정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장애의 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한다.

②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2011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적용대상 학생 중에 교과 학년 · 학기 집중이수에 따라 전입학생이 특정교과목의 미이수 · 중복이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전입생 미이수 · 중복이수 문제 해소계획에 의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자매학교와 통합교육이나 협동교육을 실시하며,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별화교육 운영

제14조 (개별화교육 운영) ①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②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포함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제15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

②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은 180일 이상 확보한다.

2.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1.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2.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유치원 및 학교에 통합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3.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이수기간 등)에 의해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전공과 학생의 현장실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산업 및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3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추가 실시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7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전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19조 (학생평가) ①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서술평가 형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의 이수와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전공과 과정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입학 후 2년이 경과하면 수료한다.

④ 학교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⑤ 학교장은 유치원, 전공과의 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전학·유예 및 면제·휴학 및 복학·자퇴·재취학·재입학

제21조 (입학) 본교의 각 과정별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정신지체를 주장애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결원 발생 시 예외로 한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령에 달하고 장애

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로 한다.

③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④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중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⑤ 전공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학교장이 선발한다.

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제22조 (입학방법) ① 본교의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전공과의 학생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전학) ① 본교 재학생이 주소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 했을 때에는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별화교육계획결과물 등의 자료를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송부 요청한다.

제24조 (유예 및 면제) ①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휴학 및 복학) ①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시의 해당학년으로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 (자퇴)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자퇴원을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취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재입학) 전공과 과정에 한하여 본교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9조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수여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

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비용의 징수

제31조 (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생활지도

제32조 (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생 생활지도는 홀트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자, 학업이 우수한 학생, 발달상황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상한다.

③ 담임교사는 학급학생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담임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담임이 직접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훈육·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6조 (퇴학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과 학생에 한하여 행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홀트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8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홀트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③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기숙사 입사) ① 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숙사 복무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기타 세칙)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제3조(위치), 제4조 5항(순회학급), 제5조(학생정원), 제7조(학년 학기), 제8조(휴업일), 제10조(수업일수)의 사항을 개정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제2조(명칭 및 학제), 제3조(주소), 제4조(수업연한), 제7조(학급편성 및 학급 수), 제10조(개별화교육),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수업운영방법), 제15조(입학자격), 제16조(취학 방법), 제17조(전학), 제19조(유예 및 휴학처리), 제20조(재취학 및 재입학), 제21조(수료 및 졸업), 제22조(자퇴), 제29조(학칙 제·개정)의 사항을 개정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4년 2월 1일자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